

第115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財務建設委員會會議錄

第 1 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1年10月12日(金) 10時17分

場 所 財務建設委員會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2. 都市計劃(案) 變更決定 意見聽取
3. 建設交通局 主要 懸案業務 報告
4. 2001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 區有財產 管理計劃 變更計劃(案)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2. 都市計劃(案) 變更決定 意見聽取(鐘路區廳長 提出) 7面
3. 建設交通局 主要 懸案業務 報告 12面
4. 2001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 區有財產 管理計劃 變更計劃(案)(鐘路區廳長 提出) 24面

(10時17分 開議)

○委員長 安載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해서 바쁘신 일정 속에 쉬지도 못하고 주민의 안전과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하반기 의회가 모름지기 19만 종로주민의 이익을 대변하여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근거로 비전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뜻에 부응하도록 하고 주민의 뜻에 역행하는 구정의 정책과 조례관행을 개선하는 일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민원에 대해서도 다수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길만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각종 불합리한 조례와 규칙,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여 지방자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민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과 시민단체, 의원 상호간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의 대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참다운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다룬 안건에 대해서도 선배동료 위원님의 슬기로운 지혜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景良 議事擔當主任의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議事擔當主任 金景良 議事擔當 金景良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1년 9월 28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2001년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2001년 10월 4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金景良 議事擔當主任!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 안건은 조례(안) 1건, 승인 1건, 의견청취 1건, 업무보고 1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1건을 처리하고 다음에 도시관리국 의견청취 건을 처리한 다음에 건설국의 건설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현장확인을 한 후에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1時21分)

○委員長 安載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董連浩 財務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안녕하십니까? 財務局長 董連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安載弘 委員長님! 吳弼根 幹事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보고드리자면 첫째,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 등록신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에는 서울특별시음반및비디오물관매·대여업자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의 규정을 근거로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2001년 5월

24일자로 동법률이 개정되어 동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 조례로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수료 징수조례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수수료 규정은 용지규격 A3이상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A2이상 크기의 카드·도면 등의 복사를 요구할 경우 A2이상의 복사기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구의 실정에서 외부업체에서 복사하여 실비에 미달되는 수수료 300원만을 징수하고 제공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시정함은 물론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열린구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업은 자유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신청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수료를 삭제하고 기존에 2,000원을 징수하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업무처리 절차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타 업종과 차이가 없음에도 수수료가 낮게 책정되어 이를 2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철저한 원가계산 결과를 적용함은 물론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책정한 사항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일반게임장업과 노래연습장업은 현행과 동일하게 각각 3만원 및 2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종합게임장업은 개정된 법에 따라 폐지되고 새로 신설된 업종인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신청은 3만원, 신고사항은 1만원으로 수수료액을 정하였는바 이 또한 원가계산 결과에 근거하여 책정된 금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기존의 등록신청 사항 중 변경신청에 대하여는 현장방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서울시 수수료 준칙안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의 1/2에 해당되는 비용을 수수료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서 용지규격 A3는 종전과 같은 금액인 300원으로 하되 정보공개청구인이 A2이상 크기의 카드·도면 등

을 1:1 비율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외부업체에서 복사를 하여 제공하되 복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사본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구청 주변의 복사업소의 복사비를 조사한 바를 보고드리자면 A2규격은 800원, A1규격은 2,000원의 비용이 필요하며 A2규격 이상을 복사할 수 있는 복사기의 구입 가격은 약 1,700만원이 소요되고 있음을 덧붙여 보고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유통관련업소의 등록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 安載弘 董連浩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蔣昭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2001년 9월 28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2개 사항으로서 1개 사항은 상위법 개정으로 시조례에 정하던 사항을 구조례에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른 사안이며, 또 1개 사항은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행정정보 자료의 발급 요구시에 복사수수료에 있어서 그 규격이 A2 신문지 크기의 1/2크기입니다. A2이상의 사본은 실제비용이 800원에서 2,000원 정도가 소요됨에도 수수료 규정에서는 A2이상은 모두 300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정골자입니다. 먼저 복사비

용 현실화 안은 A3이상 복사비용 300원으로 규정하던 사항을 A3이상은 A3는 300원, A2이상은 실비를 받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실비로 표현한 것은 A2이상은 복사시설이 우리 구에는 없고 복사전문회사에 의뢰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세를 반영코자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개정에 의한 개정안입니다. 다음 사항을 현행수수료 사항에 신규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번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자신고·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으로서 5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항은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신청 1건 2만원, 나항 게임·설비제공업 등록신고 신청 1건 3만원, 다항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1건 2만원, 라항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신청 1건 3만원, 마항 복합유통·제공업 신고신청 1건 1만원 그 이하 사항은 같은 사항을 변경신고하는 수수료로서 조금의 차등이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현행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는 각 과의 수수료 사항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전문 8조와 별표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66종의 수수료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인감증명 및 제증명수수료 규정이 24종이며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이 18종,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 2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련법규를 살펴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가져오게 된 모법규정입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시·군·구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구법은 시·도만 되어 있습니다.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으로서 자치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호.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노래연습장의 등록신청, 2호.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신청, 3호. 위 1, 2호의 변경신고 다음 조례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로서 용어가 다소 조금 생소한 용

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이라는 것은 7항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디오감상실과 비디오물 소극장 그밖의 비디오시청제공업을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이라고 정의하고 게임제공업은 청소년게임장업하고 일반게임장업을 포함해서 게임제공업이라고 합니다. 다음 복합·유통제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2종류 이상의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행 업소현황과 수수료 앞으로 수수료 수입 예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이 현행 등록 수가 245개소입니다. 비디오 시청 업소가 93개소, 일반게임장업이 180개소, 복합·유통제공업이 165개소입니다. 앞으로 이 업소가 수수료를 우리가 징수하게 됨에 따라서 예상되는 수입은 595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밑에 복사수수료 예상액까지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4개 사항은 3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 복사수수료 예상액은 지금까지 A2이상은 지금까지 신청한 사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 구별 수수료 책정현황 및 조례개정현황이 되겠습니다. 등록사항 중에서 등록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등록사항 중에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은 당초 시에서는 신규로 할 경우에 2,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2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가계산에 의해서 이 정도가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양천구를 포함한 8개 구에서는 5,000원으로 정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2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변경신고는 우리가 1만원으로 정하고 있고 시에서는 당초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래연습장, 일반게임장업은 당초와 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전 구가 똑같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고사항 중에서 복합유통업은 우리 종로에서는 1만원, 변경은 5,000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조례개정현황을 보면 이미 조례개정 완료된 데가 12곳이고 지금 우리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 곳이 12곳, 우리를 포함해서 13곳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 별표2의 9항 나호의 “게임·설비제공업”은 법 제2조에서 청소년게임장업과 일반게임장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중 청소년게임장업은 법 제46조제2항에서 구조례 제정대상으로 위임되지 않았으므로 일반게임장업만 규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구는 일반게임·설비제공업은 일반게임장업으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 책정액은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을 제외하고는 종전대로 책정되었으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등록수수료는 2,000원에서 2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라는 원가계산 결과 원가의 74.7%에 그치고 있어서 타구와의 동일한 형평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수준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원가계산 사항은 거기에 나옵니다마는 보면 7급 공무원을 기준해서 대부분이 인건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다음 장에 나옵니다마는 인건비가 2만 4,396원을 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金福同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金福同委員 金福同委員입니다. 노래연습장, 게임장, 청소년게임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게임장은 청소년들만 하는 게임장입니까? 청소년을 제외한 게임장입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청소년도 이용이 가능한 게임장을 지칭하는 겁니다.

○金福同委員 요즘 종로에 보면 어른들이 이용하는 게임장을 이곳 저곳에 허가를 많이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어른들이 출입이 가능한 일반게임장이 약 180개소 정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金福同委員 어른들 게임장에서 순수하게 놀이나 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도박으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財務局長 董連浩 업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저희 재무국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金福同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쓸데없는 비디오장이라든가 일반게임장을 많이 허가를 득해줌으로써 우리 종로구의 구민들께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구청측에서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종로5·6가동의 관내에 몇 개월 전에 몇 군데가 일반게임장이 번져있어요. 허가를 내줬습니다. 보면 구청과 경찰서 소관으로 되어 있죠? 같이 내줍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그런 소방관련 업무도 검토가 돼서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심지어는 평수는 규정이 없습니까? 몇 평이나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게임장의 장소 규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金福同委員 아무 데나 2평짜리도 내줄 수가 있고 4평짜리도 내줄 수가 있고 아무 데나 신고하면 내줍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예, 그렇습니다.

○金福同委員 이상하게, 그럼 법이 잘못됐죠.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고 운집하는 곳인데 이러한 곳에서 만약에 커다란 화재가 발생한다면 속수무책일 겁니다. 여기는 빠져나갈 길도 없을 뿐더러 이 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사고가 날 때는 어떻게 되나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 현재 일반게임장을 허가를 내줬을 때는 구청측에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우리 동네에 야간에 다리미 가지고 한달 내내 벌여 가지고 게임장에 가서 한 시간에 다 턴 사람이 있어요. 100만원 정도 월급 받아 가지고 한 시간 게임장에 가서 슬롯머신도 아니고 특수한, 게임장에 들어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게임장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께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게임장에서 몇 점 나오면 반지를, 금반지 티켓을 줍니다. 반지를 받아서 금은방에서 몇 개 모아가지고 현금으로 바꿔가고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면 커다란 문제입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답변을 드릴게요. 金福同委員님 질문에 대해서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게임장에 대해서는 저희 관계공무원이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에 임할 것이고 특히 게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시정되 되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다음에 어른들 일반인 게임장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출입이 가능합니다. 10대들도 때로는 가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른들 게임장에는 10대나 청소년들이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규정이 없다면 규정을 넣어서라도 철저하게 방지가 있어야 될 걸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吳弼根委員님!

○吳弼根委員 짧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청소년게임방은 몇 군데나 됩니까?

○委員長 安載弘 잠깐만요, 董局長님! 金福同委員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吳弼根委員님이 질문하신 내용도 국장님 답변하신 것은 등록에 대한 사항이 일반게임장업도 2평이 돼도 신고처리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시설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쪽 나와있는 경우 金福同委員님이 질문하신 대로 시설기준이

○吳弼根委員 재무국장은 여기서 지금 답변할 지기가 못되는 것 같아요.

○財務局長 董連浩 제가 참고로 위원장님이 이렇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상정한 것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

고 제가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게임장이
나 관련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다른 부서에서 하
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사실은 모르고 있는 사
항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답변하신 것 들으니까 이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국장님 답변이 적절
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吳弼根委員 청소년게임장이 몇 군데냐고 물어
봤습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업소
가 170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吳弼根委員 일반보다 많네요?

○財務局長 董連浩 일반게임장은 180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검토의견에 보면 청소년게임장은
구조례에서 제외가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러면 이 기회에 청소년게임장도 170개소나 되는
데 구 조례도 개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이것은 蔣昭秀 專門委員께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법안을 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잘못돼서 그것을 잘못 포함시킨 사항이라서 이번
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것것을 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개정해주시
면 고맙겠고 또 방금 청소년게임장의 경우에는 별
도의 신고절차 없이 자유업으로 하도록 지금 입법
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吳弼根委員 그러면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업으로 되면

○財務局長 董連浩 자유업으로 하면 수수료를 당
연히 수수료를 안받아요

○吳弼根委員 안 받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예.

○吳弼根委員 그래서 이번에 제외가 됐군요?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수고하셨습니다. 金福同委員

님! 추가로 질문하실 거

○金福同委員 위원장께서 나에게 기회를 줬으니
까 여기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물었던 것은 사실
상 董連浩局長하고 무관한 관계라고 봅니다. 수
수료징수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국장님들이 아시
고 계셔야 하고 무슨 어떤 부서에서 합니까? 허
가부서는 어디입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문화진흥과에서 관련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재무건설하고는 동떨어진 문제가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董連浩局長한
테 물었다는 것을 속기록에 넣어주라고 얘기합니
다.

○財務局長 董連浩 金福同委員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유관 관련되는 부서에 전달해서 업무가 제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金福同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吳錦南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용
지규격이 A3는 종전과 같은 금액 300원으로 하되
정보공개 청구인 A2 이상 크기의 카드도면 등을
일대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외부업체에서
복사를 하여 제공하되 복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사
본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외
부에서 복사를 해서 가져오는 것이 그 사용료가
1,700원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지금 A2 이상을 복사할 수
있는 복사기를 저희가 구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A2 규격 이상의 복사
기를 구입할 경우에 복사기 구입액이 1,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A2 규격을 복사할
수 있는 비용은 800원 정도이고 A1 규격의 복사
용지를 복사할 경우에는 2,000원 정도를 받고 있
는 게 우리 구청 주변에서 조사한 가격입니다.

○吳錦南委員 그러면 A1이나 A2는 외부에서 전
부 복사를 하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그동안에는 A2 이상의 정보

제공을 청구한 사실이 아직은 없었습니다만 이후에 그런 규격의 용지를 복사해달라고 요청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吳錦南委員 만약에 그렇다면 A1이나 A2를 요구할 시 외부에서 계속 복사를 해야할 경우에 서류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출을 해야 되지 않아요?

○財務局長 董連浩 불가피하게 옮겨야 되는 상황 이겠지요.

○吳錦南委員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공개하는 자료지만 외부에 가져가도 되는 건가? 아니면 복사기를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

○財務局長 董連浩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시다만 이 A2 이상의 규격에 정보자료를 청구한 실적은 없었습니다만 이 복사기 가격이 약 1,700만원 정도로 대단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사항에 대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A2 이상 규격의 복사를 위해서 우리 자료를 외부로 반출해야 하는 경우도 걱정을 하셨는데 그건 대외적으로 정보공개가 가능한 그런 자료만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운반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리고 운반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보안대책을 강구해서 복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만에 하나라도 물론 정보공개지만 서류를 가져가서 복사할 경우에 어떤 비공식적으로라도 어떤 유출이 있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복합유통제공업 신청등록이 건당 3만원이고 복합유통제공업 신고신청이 1만원입니다. 등록하고 신고하고 구별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격이 다른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등록신청하면 바로 신고절차가 나오는 게 아니군요?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그걸 병행해서 한꺼번에 해주면 안 됩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필요없었습니다만 등록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현장확인도 하고 하는 그런 부수적인 업무가 수반되기 때문에 등록업무하고 신고업무는 별개로 구분지어 신고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吳錦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董連浩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委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네. 吳弼根委員! 토론하십시오.

○吳弼根委員 吳弼根委員입니다. 서울특별시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조례(안) 별표2의 9항 나호의 개인설비제공업은 상위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설비제공업은 일반개인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吳弼根委員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吳弼根委員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委員님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1分 會議中止)

(10時58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載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都市計劃(案) 變更決定 意見聽取(案)(鐘路區廳長 提出)

○**委員長 安載弘**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안)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河徹昇입니다. 존경하옵는 財務建設委員會 安載弘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委員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구 관내 삼청동 산2-16번지 일대 공공청사 부지 중 삼청동 158-29를 해제하는 공공청사 변경결정에 대한 건입니다. 삼청동 산2-16번지 일대 공공청사부지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당초 조선총독부고시 제208호로 '40년 3월 12일날 삼청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그후 서울시고시 제176호로 변경결정이 삼청근린공원에서 와룡근린공원으로 되었다가 또다시 서울시고시 제149호로 '91년 5월 27일날 공공청사 용도로 결정된 곳으로서 지금은 산림청 산하 서울국유림관리소가 운영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이번에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유는 해당부지 소유자로부터 여러 차례 해제민원이 접수되어 검토한바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인 산림청에서 해당 부지를 수용할 계획이 없고 도시계획시설 해체에 반대하지 않았으며 서울시에서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검토를 해본 결과 이 부지는 정부에서 민원인에게 매각한 토지입니다. 따라서 해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토지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청동 158-29번지 동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후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부지 248.8㎡는 현재 와룡근린공원에 인접한 관계로 서울시용도지역관리지침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

역으로 종별구분 지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도시계획(안)을 2001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공람·공고하였으나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한 후 우리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변경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安載弘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 올릴 것은 지난번 회의 때 委員長님을 비롯해 委員님들께서 주로 중요한 도시계획변경 사항이나 법령 개정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알려줬으면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요약해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보시고 자세한 사항이 더 필요하시면 추후로 더 말씀을 하시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參照)

都市計劃(案) 變更決定 意見聽取

(鐘路區廳長)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安載弘**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네. 吳錦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지금 삼청동 158-29나 29에 해당되는 248㎡는 시에서 구두로 언약이 된 사항입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그 땅은 과거 정부에서 민간인에게 매각을 한 땅입니다. 매

각을 한 땅인데 모르고 아마 공공청사를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도 이 부분을 빼고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수용할 계획도 없다 하는 내용이고 따라서 당연히 이거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서 민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吳錦南委員 지금 대로변에 사직로라든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추사로라든지 제3종미관지구를 무슨 환경 무슨 지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곳에 풍치지구 내 일부 있는 것이 완화지역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건축행위가 아직 안된 데. 그런 곳을 좀 상세히 우리 구에서 찾아내서 민원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서울시에 일부 건의 사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또 빠진 데가 있는 걸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오늘 이 의견청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局長님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吳錦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玄壽漢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玄壽漢委員 玄壽漢委員입니다. 158-29 이거는 해제하게 되면 그 부근이 뒤가 전부 공공청사 아니에요? 이거 해제하면 집을 반드시 지을 것 같은데 미관상의 어떤 지장이 없나? 이거 해제해주면 토지주가 건물을 분명히 지을 거라구요. 그랬을 때 미관상 어떤 그런 게 안 나올까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일단은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만약에 현재 건축행위 신청이 있게되면 그때 가서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현재로는 별다른 물의는 없습니다. 현재 공영회청사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현재 공영회청사가 들어가 있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현재는 임야상태로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玄壽漢委員 아니 공공청사를 나중에 짓게 되면

앞을 가린다가 미관상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땅 소유주는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로 딱 지으려고 할거라구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현재 부지로 남아있는 그 지역과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과는 단차가 4~5m 더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58-9하고 158-1, 28 이거를 일단 대지로 해서 이미 매각을 한 겁니다. 오히려 공영회 청사 현재 부지보다는 그 밑에 있는 158-1 이 대지와 더 동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잔여 공영회 청사 부지하고는 좀 특성이 다릅니다. 4~5m 단차가 있어 가지고 이걸 오히려 공영회 청사로 활용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땅입니다.

○吳弼根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吳弼根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丁炳煥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우리 局長님 설명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산2-16번지나 158-29 면적이 약 한 80여 평되는데 이거를 민간인한테 매각하고 있다가 지금 산림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산림청에서 원래는 이거를 감사원에서 아마 교육원을 지을 부지로 최초로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산림청으로 넘어가서 산림청에서 자기들 필요한 청사를 지으려고 이 땅을 지금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158-29번지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금 잔여 공영회 청사가 2,700㎡ 되지 않습니까? 2,900㎡ 중에서 2,700㎡는 남기고 248㎡만 해제하는 건데 이 248㎡는 나머지 잔여 2,700㎡하고는 지금 대지의 특성이 좀 다릅니다. 이 2,700㎡ 하고는 단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158-1 이 필지하고 오히려 좀 대지가 동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단의 대지로 그렇게 해서 매각이 되어버린 건데 그걸 정부에서 잘 모르고 이 부분까지 공영회 청사로 지정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잘못이 있어서 이걸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도

이거는 당연히 자기를 공영회 청사로 사용할 이유도 없고 해제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丁炳煥委員** 그러면 일반인한테 매각을 했으면 이권 한 사람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와룡근린공원에 인접한 관계로 서울시용도지역 관리지침에 따라 1종일반미관지구라고 하는 것은 4층 이하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소유주가 1종을 2종으로 요구했을 때에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변여건이나 경관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1종으로 하겠다고 광방·공고를 한 과정에서 민원인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1종도 수용하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당연히 이거는 해제를 시켜서 소유주한테 되돌려줘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반드시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丁炳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다음은 金福同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福同委員** 金福同委員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민원이 제기된 일이 있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金福同委員** 다발성 민원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옛날부터 개인소유로 되어 있던 것을 기관에서 이용한 것 아닙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공공청사 부지로 묶어둔 겁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가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조금 제약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金福同委員** 그러니까 문제는 개인소유의 재산

권을 기관에서 묶어놓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개인의 재산을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 지역을 묶어놔서 이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걸 묶어놔서 이 사람들이 활용을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반성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맞습니다. 委員님 말씀이 맞는데 국가에서 공공시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 결정을 부득이하게 합니다. 하면 물론 신속하게 보상을 해주고 정부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보상도 못 해주는 상황에서 그동안 방치해둬으로써 토지소유주가 재산권 행사하는 데 제약을 준 거 이권 잘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金福同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金福同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다음은 吳錦南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우리 사직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도로가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예산이 편성된 데는. 그럼 거기에는 도로만 놔서 되느냐? 아니면 부설적으로 웬스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돼야 되는데 일부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데 사직터널에서 오른 쪽으로 올라가는 길목을 보면 거기가 무척 가파릅니다. 그럼 그곳 바로 옆에 우리가 확대 보상한 땅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계단을 만들어서 웬스를 해줘야만 나이 잡수신 분들이 다닐 수가 있는데 도로만 놔주고 그 자체는 시설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283번지 쪽에 또 한 5m의 옹벽이 쳐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웬스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도 안 되어 있고 좀더 올라가면 수도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6m 정도의 낭떨어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현재 웬스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된 상태에서 공사가 끝난 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도로만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로를 났으로써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이 따르는 것

도 다 점검을 해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 겨울에 현재 이 상태로만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걸 참작해주시고 현재 공사 마무리가 됐어도 그분들한테 어떤 내용적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무리가 완전히 돼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안 나오도록 부락을 드리겠습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알겠습니다. 吳錦南委員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서 도로를 활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쉼스를 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吳錦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李炯述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炯述委員 李炯述委員입니다. 局長님! 현 위치가 공지로 되어 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李炯述委員 본 위원이 이 지역에서 이렇게 넓은 공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월남대사관 뒷집입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李炯述委員 현재 위치가 공지로 되어 있어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해제하고자 하는 쪽은 지금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바로 월남대사관 건물 뒤에?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인접해 있습니다. 뒷쪽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는데 인접된 대지에 지금 일단의 큰 필지 중에서 280평 정도 되는 부분만 지금 해제하는 겁니다.

○李炯述委員 그러니까 이 대지가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고 공지로 되어 있는 겁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현재 해제하고자 하는 이 필지는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본 위원이 이렇게 넓은 공지를 못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李炯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영회 청사는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나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럼 그 밑의 158-1호와 2호, 4호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나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네.

○委員長 安載弘 그러면 해제하려고 지역과 나머지 잔여토지의 용도지역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1종지역으로 바뀌나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현재 기존에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종별구분을 안 해왔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용역을 취 가지고 2003년 6월까지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종별구분을 할 겁니다. 다만 새롭게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별구분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158-29번지 필지는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가되 이 158-1과 그 밑의 필지는 이번에는 종별구분을 짓지 않고 2003년 6월까지 결정을 하는데 아마 인접된 필지이기 때문에 이 158-9번지하고 비슷한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제가 질문을 드린 건 아까 金福同委員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각종 도시계획 관련 법령이나 조례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는다면 그건 정말 고쳐나 가야 할 일이라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 이 삼청동, 가회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해제요청이나 용도지역 변경요청을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볼 때 이것을 이번에 委員님들이 의결해서 가지고 용도변경을 승인한다면 인근의 자연경관지구와 관련된 지역 내 도시계획용도변경도 최선을 다해서 해서 가지고 종별을 구분한다면 1종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더 질의하실 委員!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委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0分 會議中止)

(11時26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載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主要懸案 業務報告의 件

○委員長 安載弘 의사일정 제3항 주요현안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받을 안건은 건설교통국의 건설공사 추진현황 위주로 현황업무 보고가 되겠습니다. 康亨宇 建設交通局長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안녕하십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입니다. 유인물이 배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토목과 업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토목과장으로 근임하던 鄭鎭皓課長이 성동구청으로 가고 새로 鄭璣哲課長이 서울시청 방제기획과에서 9월 20일자로 저희 구청에 오셨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인사드린 분도 있고 익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建設交通局 主要 懸案業務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 安載弘 康亨宇 建設交通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시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玄壽漢委員님!

○玄壽漢委員 玄壽漢委員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오시자마자 일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어요. 고생 많은 걸 알면서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구 재해대책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제가 숫자는 기억 못하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 10 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그 현황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기금이 9억 5,200만원 상당이 되어 있고 사용액이 1억 3,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잔액이 8억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玄壽漢委員 지금 현재 이것이 몇월달 현재 8억 2,000만원이 남아있다는 얘깁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9월 30일 현재

○玄壽漢委員 한가지 제가 여쭙볼게요. 부암동 29-4쪽에 산쪽에서 북악산에서 흘러내려오는 하천 계곡물이 매년 장마 때마다 넘쳐 가지고 이 밑에 자하문터널 있는 데까지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하수관이 막히고 집들, 가게, 점포 이런 게 침수가 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개울 하수관을 고쳐달라고 벌써 한 6, 7년 전부터 다시 공사해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도 안돼 가지고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 그만두신 이중철과장이 마지막 가시면서 현장 나와서 조사하시면서 사진도 전부 첨부되어 있는 줄 알아요. 금년에 재해로 인한 피해가 크니까 그 공사를 꼭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까지 협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 전에 담당이 나

와 가지고 돈이 없어서 금년에 공사를 못하니까 내년 사업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사대금이 얼마나, 크게 했을 때는 오륙천만원 들 거라고 생각을 했고 하수관을 다시 뜯어서 묶고 토사 막힌 것을 퍼내면 한 오륙백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는 보고 있었는데 지금 견적 나온 게 천만원이랍니다. 천만원이 없어서 올해 공사를 못한다면 말이 안되지 않느냐, 지금 8억 2,000만원이 남아있고 또 8억 2,000만원이 전혀 없다 해도 이것은 예비비에서 돈 천만원 꺼내다 쓸 수 있는 공사라고. 매년 피해가 아주 주민들이 아우성이 나는데 이것을 군부대가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방치했다가 이번에 군부대까지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득한 사항이거든요. 천만원 때문에 금년에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것은 8억 2,000만원 남아 있으면 예비비에서라도 꺼내 쓰고 안되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광고물 해서 10억 인센티브 받은 것 그거라도 토목과에서 몇 천만원 받아서 공사를 해야지 이것을 내년도에 민다는 것은 국장님 방침인가? 여기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아까도 제가 보고할 때 지난번 제가 오자마자 수해관계로 정신이 없었는데 그때도 이것을 인식을 하고 빗물받이를 그때 하려고 했는데 군문체하고 여러 가지가 걸렸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금도 다 소요되어 가지고 또 궁리궁리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센티브 거기에서 문제라든가 기금문제 최근에 기금에서 1억 정도를 땀겨왔습니다. 다른 일도 하고 있지만 이 항목이 안 들어가 있는데 다음 주부터 이 일을 굳혀보도록 하겠습니다.

○玄壽漢委員 주민들한테 답변자료가 없어요. 올해는 틀림없이 해주겠다고 매년 연속 그 지역이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군부대가 관리한다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미뤄왔는데 금년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군부대까지 아예 결말을 보자. 그래서 결말 본 사항이 돈 천만원 때문에 공

사를 못한다는 것은 예비비에서라도 꺼내 쓸 수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금년 중에 해드리겠습니다.

○玄壽漢委員 꼭 약속하실 수 있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예.

○玄壽漢委員 치사하게 돈 천만원을 내년 예산에 확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 금년에 하도록 하시고 또 한가지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홍지동 122 홍지문에서 세경정로터리로 돌아오는 도로확장 공사가 있습니다. 약 2~30m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10년 걸려서 도로확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 건의를 드리느냐 하면 상명대학교 홍지동쪽이 2개통 주민이 사는데 문화촌에서 홍지동에서 들어와 가지고 상명대학교 쪽에서 좌회전이 안돼요. 2개차선 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차나 모든 차들이 하림각이나 또 동에서 유턴을 해서 올라가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학교버스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껴서 좌회전선을 만들어달라 해서 도로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확장하는데 차선을 하나 만들고 5m는 인도를 만들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전부터 인도가 필요치 않아서 인도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사람이 전혀 다니지 않아요. 지금 북부고속화 순환도로인가 그거 나기 전 거기 물탱크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거기 약수물을 드러 사람이 더러 다녔는데 공사를 하면서 사람 출입이 안되니까 또 물도 나빠지고 그래서 전혀 그쪽으로 사람이 다니지 않는데 구태여 인도를 보도를 5m씩 넓혀서 해놓을 필요가 없다. 제가 지난 9월달에 통장들 회의도 소집해 가지고 건의를 들어봤는데 거기 필요 없으니까 차라리 차도를 하나 더 만들어서 2차선으로 넓혀 가지고 좌회전차나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효자동쪽으로 빠지는 것을 원활히 빠지게 차선을 더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5개 통이 관계가 되는데 5개 통장들한테 건의서를 주민들 건의서를 받아서 우리 구청에다가 접수해 시켜라. 아마 이 달 안으로 그것이 접수가 될 걸로 압니다. 그것은 한 번 우리 구에서

검토해서 가지고 인도를 내셔도 조그맣게 인왕산 길 올라가는 데 작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암동 29-4는 분명히 올해 공사를 해주시고 홍지동 건 도로확장은 인도를 줄이고 차선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을 건의를 드리니까 현장 나가서 살펴보고 타협을 해서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공사 다 된 다음에 지금 전주를 이설하려고 하는데 인도쪽에다 이설하면 나중에 전주를 다시 옮겨야 하는 이중 일이 나오거든요. 애저녁에 방안이 나와줬으면 하고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거기 공사가 곧 마무리가 될 입장이거든요. 마무리가 되는데 아마 지역주민이나 위원님이 현장여건은 저희들보다 분위기는 잘 아실테니까 이러한 건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좌회전을 하다 더 넣는다든지 인도를 축소하는 이러한 문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주민의견서를 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玄壽漢委員 공사일정은 내가 다리가 이래서 못가봤지만 차로 다니면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금년 말로 공사가 완료되기, 암반이 있어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부지런히 놓치지 마시고 검토를 해주십시오.

○委員長 安載弘 玄壽漢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李炯述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李炯述委員 李炯述委員입니다. 국장님 금년도 업무추진 과정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진행하고 있는 것이 35건, 미집행이 36건이라고 그러셨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완료가 28건, 진행이 35건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李炯述委員 미집행이 36건,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은 지난 해에 구청장을 모셔다가 구정질문 할 때도 한결같이 나온 얘기가 공사를 하면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 연말에 집중적으로 모

아 가지고 예산불용이 안되게 감독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양을 연말에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가 부실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미집행된 36건은 국장님 어떻게 신경을 써서 월별로 나누어서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한 달에 전부 발주를 해서 감독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면 아스콘 포장을 덧씌우기를 하지 않고 분무기로 뿌려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생기니까 모래를 한 차 갖다가 빗자루로 쓸고 보수한다고 하고 돈을 지불하고 주민들에게 민원이 생기도록 하는 이러한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종로구 각 골목골목에 아스콘 포장을 한 데 가보면 하수도공사하고 도시가스공사하고 수도공사하고 다시 덧씌우는데 상수도공사를 하면 당연히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내주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예.

○李炯述委員 굴착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 아스콘 덧씌우고 난 뒤에 현장확인을 합니까? 답을 주시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확인을 합니다.

○李炯述委員 확인을 하면 차가 다니는 데에 굴곡이 생겨서 엄청나게 주민들에게 불편이 옵니다. 그렇죠? 옷을 짜집기를 하더라도 색깔이 비슷한 것을 해놔야지 검은 옷에다가 흰 것을 해놓으니 보기 흉합니다. 어느 골목을 가보더라도 상수도 공사를 하든 도시가스공사를 하든 덧씌우기를 하고 난 뒤에 종로구청에서는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공사하고 나면 끝내고 골목골목을 가보면 아스콘 덧씌우고 난 뒤에 움푹 파진 데 여름장마 오면 비가 고여 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지나가는 사람들 옷에 날벼락이 맞고 이런 게 수없이 많습니다. 공사를 굴착허가를 내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든지 공사현장에 가가지고 그것을 잘못됐는지 확인을 해서 다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종로구청에서 할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최근에도 굴착복구에 대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계 감독이든지 계장을 모아서 정규 다짐을 하고 물 다지기를 하고 그러한 침하가 없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기술자가 이렇게 내가 기술자를 벗어나더라도 그러한 지적이 나올 것은 뻔하고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겠고 계속 그러한 형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서울시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북촌가꾸기라고 해서 천억이 넘는 돈을 서울시 예산을 넣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지금 감사원 올라가는 이쁘게 해놓은 도로포장을 아스콘 포장을 해놨습니다. 거기 도시가스를 새로 뚫어 가지고 얼마 안됐는데 뚫었어요. 덧씌울 때 어떤 신경을 쓰면 노면이 일치가 됩니다. 평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앙고등학교 현대건설 내려가는 북촌 중심지를 한번 보십시오. 중앙고등학교 거기 보면 한 100여 군데가 들랑날랑 해가지고 꼭 저 도로에 골목길에 네모난 돌맹이 갖다가 깔아놓은 그런 아스콘 포장이 됐어요. 보통 4~50cm 이상 굴곡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거기만 그러냐? 종로 전체에 어느 골목 가든지 전부 그렇다. 이러한 부분은 토목과에서 관리감독을 좀 소홀히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 다시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명심하겠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10월 5일부터 10월 20일 이달 말까지 이러한 굴착복구에 대한 하자 부분에 대해서 일한 것들을 저희들이 직원들이 이번에는 갑연이 아니라 직원들이 전체 배분을 해서 철저히 한번 조사하는 계획을 갖고 벌써 계획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한가지 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빗물받이는 도로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빠지죠? 빗물받이가 도로보다 높으 올라가면 그 물은 어느 도로가 침수되고 난 뒤에 빠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 차가 지나가게 되면 인도에 지나가던 시민들은 물벼락을 맞습니다. 국장님! 금년 중에 종로구 관내의 도로면에 있는

빗물받이가 도로보다 높은 것은 일일이 조사를 해서 좀 도로보다 낮게 물이 제대로 빠질 수 있도록 조치를 꼭 해주시고 그 예를 다시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번 제가 안국전철역 옆 20m도로입니다. 그 도로변이 빗물받이가 도로보다 한결 높아요.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주택으로 넘어가요. 비가 많이 오면. 빗물받이가 도로보다 낮아야 되는데 높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현재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것이 종로에 여러 군데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할 때에 낙산 쪽 내려가면 돌아가면서 공사가 끝이 나고 난 뒤에 현장 감사를 나갔을 때 여러 군데가 도로보다 빗물받이가 높은 데가 수없이 많아요. 왜 이렇게 했느냐, 공사를 한몫 발주를 해가지고 여기에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사대금을 지불을 하지 않느냐? 지불해주지 않습니까? 공사가 누가 보더라도 서울시민이 봤을 때 이것은 안되겠다고 보는 저거는 두 번 다시 종로에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주하더라도 나머지 36건은 월별로 좀 나누어서 철저히 감독을 할 수 있는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연말에 가서 한몫 발주를 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감독 소홀로 인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국장께서는 李炯述委員님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의 질문에 철저히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내용에 답변하실 때는 메모를 잘 하셨다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회신을 해주세요. 우리 玄壽漢委員님, 李炯述委員님, 앞으로 질문하실 金福同委員님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金福同委員님!

○金福同委員 金福同委員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종로구청에 부임하신 지가 3개월 정도 되셨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예, 그렇게 됐습니다.

○金福同委員 내가 어떤 질책보다 잘한 것에 대

해서 먼저 감사드리고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고맙습니다.

○金福同委員 국장님 오시자마자 수해로 인해서 종로구 관내에서 우리 지역이 피해를 가장 크게 봤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동대문시장과 종로6가 파출소 자리 그 옆에 부분에 박스를 뚫고 도저를 거기다 집어 넣고 지하 밑에서 굽어내는 모습을 보고 '아, 우리 국장 일할 수 있는 분이구나' 제가 용기를 얻은 일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박스 신고 하는 그 지하까지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맙게 생각하면서 물었습니다. 우리 종로5~6가 관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박스가 어디로부터 연결됐느냐 하면서올대학병원에서 해화동, 명륜동, 이화동 할 것 없이 그 지역을 박스로 해서 옛날 충신동과 효자동 사이에 그 박스가 오기까지 옛날에 거기가 계곡이었습니다. 과거 36년전에 그쪽에서 제가 살고 있을 때 보면 개천이었어요. 개천을 파내고 박스를 높이 4m로 해서 박스관을 내 가지고 묻었습니다. 그 박스관을 묻은지 3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그 박스관을 한번도 청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 박스관 덧쇠우기 위에 솜통이라고 철판을 까는 것이 덧쇠우기 공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완전히 10전 이상 차이가 나서 차량이 통과할 때는 덜컹덜컹 해서 철판물로 덮어놓은 것이 휘는 일이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네.

○金福同委員 그래서 지난번 본 위원이 구정질문할 적에 구청장에게 준설공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청장 답변이 준설사업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지역에 큰 피해가 왔던 원인은 준설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피해가 많았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고 계십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네. 알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그 피해로 인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0m이상의 도로에 빗물받이가 있지요? 빗물받이는 도로법상 시간당 60mm를 기준으로 해서 빗물이 나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100mm이상 왔기 때문에 그 빗물을 받아내지 못하고 그 빗물이 상가나 가정을 덮쳐 가지고 마다가 됐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봤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종로5~6가동의 피해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건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局長님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어요. 課長님들도 모르시죠? 우리 지역에 약 600군데 이상이 피해를 봤습니다. 상가, 주택에 물바다가 된 것이 4~6가에서. 주택에 피해가 있는 것은 90만원씩 보상을 해줬지요? 몇 세대, 몇 가구에게 줬습니까?

○金福同委員 이 자료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구요 그 숫자는 제가 좀

○金福同委員 그런데 문제는 주택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90만원씩 주고 나머지 점포에 20~30억씩 피해를 본 집은 10원도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구정질문 때 얘기를 또 할 겁니다. 이런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과장님께서는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이번 예산에 다시 반영시켜서 준설공사를 철저히 할 것이며 또 이것이 안 될 때에는 이 보다도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본 위원이 확신합니다. 준설공사를 철저히 하지 않으려면 그 박스관을 들어가서 하든 굽어내든 보니까 4m 높이에 1m50이면 3m 얼마 가지고 그 물이 빠져나가는데 지금까지 준설공사를 안 해 가지고 높이가 1m50까지 되어 있더라구요. 6가 파출소 청계천 넘어가기 직전에 보니까 1m50이에요. 자갈로 메워진 것이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몇 백차 퍼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되지 않고 대학로서부터 청계천까지를 연속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로간 충신시장간 도로공사는 서울시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렇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런데 그 공사를 작년도에 서울시로부터 30억을 예산편성 했는데 지금까지 18억

6,000만원이 남아있는 그 이유가 뭐니까? 왜 공사를 진전시키지 않고 이대로 놔두는 겁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에 건의를 하니까 종로구청에서 협조가 없었다는 겁니다. 보상을 먼저 해줘야 하는데 보상도 안 해주고 하려고 하는 의욕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넣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명년 2002년까지 도로가 완공이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 무슨 교차 20m구간까지만 딱 들어가 놓고 보상이 들어간다 하면서 몇 집만 보상해놓고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는 이유는 뭐니까? 담당 과장이 얘기하시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답변을 하기 전에 준설문제는 저도 동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 준설 관계는 안 올려놨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에는 전 구간을 한번 준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얘기하신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리도록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대학로 충신시장간 도로개설공사를 금년까지 완료를 했어야 해요. 그런데 작년에 일부구간 조금 하는 척 하다 말고 예산집행도 않고 보상도 않고 서울시의 예산도 가져와야 되는데 얘기 한마디 않고. 이렇게 서울시와 구청이 협조가 안되니까 서울시에 제가 가서 물어봤더니 종로구청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局長님이 상세히 모르셔서 그렇지만 속담에 밑에 사람이 잘 받아들여줌으로써 구청장이 욕을 안 먹습니다.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쓰고 그 다음 예산을 또 받아 가지고 다음 연결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작년도에 30억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을 작년에 못 쓰고 보상도 못 하고 있고 금년 예산은 받지도 못하고 있으니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일하는 局長님이 좀 돼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이 부분은 常任委員會가 끝나면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金福同委員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金福同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劉燦鍾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燦鍾委員 劉燦鍾委員입니다. 먼저 韓康局長님께서 종로구에 오신 것을 재무건설위원회를 빌어서 환영합니다. 수해복구 추진현황에 교남동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통계가 잘못됐나요? 교남동도 하수관 역류현상이라든가 기타등등 해서 침수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통계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싶고 다음에는 토사유출에 관련해서 행촌동 210-15 이 부분은 주택과에서 처리한 내용으로 알고 있고 하수관련 시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료가 누락이 됐다면 다시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어떻습니까? 요즘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생활불편 민원이 각 동이나 구에 많이 폭주하고 있는데 그 생활민원들이 주택과나 토목과의 업무가 많습니다.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관내에도 보도블록 보수, 또는 침하 이런 소소한 부분들이 예산관계 없이도 단순하게 신경만 쓰면 보수가 가능할텐데 그런 부분이 3~4개월씩 지연되고 이게 지금 동에서 민원 관련을 자치행정과로 보내면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토목과에 접수가 돼서 다시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이게 몇 건이나 됩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제가 온 후로 나타난 문제점은 지금 지적해주신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으로 옳으신 지적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을 하나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이렇게 와 가지고 그랬는데 그걸 가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수해관계, 복구관계로 우리 관계 팀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지치고 있었는데 그걸 나가봐 달라고 했는데 하루종일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걸 발견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기 이후에 알게 됐는데 우리 직원들만 나가니까 어디가 어딘지 찾지를 못하고 오후 내내 소비를 하고 왔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시스템 문제를 얘기하셔서 옳으신 지적

으로 저도 판단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 비예산사업으로 우선 체제를 바꾸자. 동기능이 그렇게 구청으로 올라왔는데 구청에서 그걸 속속들이 다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년에는 제도개선, 즉 시스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자가 직접 조사를 다닌다든지 현장에 있는 민원을 통,반장 어디든지 연락을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고정해서 연락을 하면 그 통반장을 쫓아가든지 해서 장소나 위치를 확인해 가지고 선시공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내부방침을 저희들이 이렇게 굳혀가고 있습니다. 일차로 한 번 보고는 개통적으로 했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 수단이나 절차 관계는 다시 한번 잘 다져보자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劉燦鍾委員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지어서 기존의 생활불편민원들이 소소한 계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일부가 침하돼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계 관리시스템을 개선해서 보강을 한다든지 하면 될텐데 그게 지금 사소한 민원이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동기능 전환이 폐지돼 가지고 지금 토목과, 주택과가 주업무인데 시스템의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주택과, 토목과만 타할 일이 아니에요. 區廳長하고 협의해서 시스템을 가동시켜보도록 하세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연구하고 있습니다.

○劉燦鍾委員 제가 하도 답답해서 우리 지역입니다만 관련 지도를 그려서 형광싸인펜으로 전부 사인 첨부해서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토목과에 접수돼서 토목과에서 언제쯤 할 수 있는가? 그걸 예측가능하게 통보를 해달라 그랬는데 아직도 통보를 안 해주고 있어요.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또 실무진도 바쁘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19개동 다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과를 꼭 통보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보도포장 같은 부분하고 준설문제는 저희들이 올해보다 2배 이상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지원해주시면 저희들이 몸으로 뛰는 거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劉燦鍾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劉燦鍾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다음은 丁炳煥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반복되는 질문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토목공사에 대한 예산이 63건에 24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001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우리 토목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아까 李炯述委員님이 서두에 지적 하셨습니다만 상반기에 대충 28건에 53건이 남고 하반기 진행사업이 35건에 117억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63건에 243억 예산을 배정받고 할 때는 말씀드린 거와 같이 무슨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는데 무엇 때문에 12월 말일경 추운 월동기에 공사를 발주하고 만약에 발주가 또 안되면 불용처리하거나 명시이월시키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연말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월동기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생기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 무엇 때문에 연말에 닥쳐서 공사를 발주하려고 하는지 그 저의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유인물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성이라는 일한 내용이 7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완료된 것은 28건이고 진행되는 것이 35~6이고 1건은 용역사업으로 처리되는 일인데 36건이 지금 미집행했다는 얘기는 미완료했다는 얘기로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35건 117억이 일이 지금 진행돼서 연말까지는 다 끝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 이월될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예산관

계상 4건 정도가 넘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건 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명륜동이라든지 혜화동 이런 것은 용역사업이 지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러한 컨설턴트 부분에서,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끝난 것을 그 부분만 넘어가고, 그러니까 丁炳煥委員님 걱정 마십시오.

○**丁炳煥委員** 아니 답변 중에 금년 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시킨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자료에 보면 추울 때 발주를 예정할 것도 있는데 왜 월동기에 발주를 하나 이거예요. 당초에 예산이 있었으면 따뜻할 때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할 생각을 해야지 왜 꼭 월동기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묻고 싶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월동기에 발주할 것은 없습니다.

○**丁炳煥委員** 아니 여기에 10월 몇 일부터 발주해 가지고 12월 몇 일까지 한다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런 거는 있습니다. 한 달 걸리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수방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거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63건에 대해서 지금 아까 진행중인 35건을 하게 되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12월까지는 끝나고 저도 12월 동절기 들어가면 12월부터 2월까지 물공사가 이 부분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좀 따뜻할 때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丁炳煥委員** 어쨌든간에 2002년도 예산을 요청할 때는 충분한 사전 계획을 세워서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종로관내 보도블록을 까는데 얼마 깔지 않아서 굴곡이 생겨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좀 신경을 써서 보도블록을 깎으면 이런 침하되는 일은 없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보도블록을 깔 때 굴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제가 토목과에 질책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 의제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만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굴착공사를 신청했다고 했죠?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계약을 못 해가지고 혹은 누락되는 경우도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러면 굴착을 해가지고 덧씌우기를 다 하면 재굴착을 하려면 3년 후에나 굴착이 가능하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네.

○**丁炳煥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악동 47-7에 도시가스 배관 들어가는 데에서 불과 1m도 안 되는 데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1m인가 10m이내에는 3년이 안 지나도 바로 굴착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토목과에서는 누락된 사람이 도시가스를 좀 넣어달라고 하니까 탁상공론으로 3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해서 민원인들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신청을 했더니 무엇 때문에 그때는 10m이내를 해줄 수 있는 규정을 어디서 찾아서 해줬는데 토목과에 앉아서, 막중한 업무를 다룰 토목과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해야지 탁상에 앉아서 이걸 안돼 이렇게 공문을 보내셔야 되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앞으로 우리 종로를 위해서 고생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민원이 있으면 탁상에 앉아서 법으로 이걸 안돼 그러지 말고 안 되면 끝까지 안돼야지 왜 나중에는 규정을 찾아서 해주냐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린 겁니다. 그리고 금년 2001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반영이 안됐고 우리 독립문 초등학교 올라가는 행촌동길, 아마 교남동 의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교남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들이 덧씌우기를 희망하고 있고 본 위원이 거기 순찰을 한번 나가보면 지반이 꺼져 가지고 노약자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금년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덧씌우기를 부탁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러면 만약에 덧씌우기를 할 때는

여기 교남동 의원이신 劉燦鍾委員님도 계시니까 저한테도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알겠습니다. 아까 침하된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명심해 가지고 정규시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丁炳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吳弼根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弼根委員 吳弼根委員입니다.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못 하고있는 원인이 뭐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이유는 없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 된다고 그러면 조사를 해가지고 인력과 장비가 쫓아가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가 돼 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많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본 위원에게 발령이 나신 鄭鎭皓課長께서 관내 도로보수공사 해가지고 9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희 혜화동 관내에 올해인 2001년도에 7건 정도의 아스콘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3건은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청을 맡고 있는 권대석 사장인가 그 분에게 왜 지금 날씨도 좋고 그런데 공사를 왜 안 하고 있는냐고 물었더니 토목과에서 일을 안 시켜서 못 하고있다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좋은 날 왜 공사를 못 합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지금 자료가 있는데 이건설무적인 내용이라 담당계장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吳弼根委員 그러세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잠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吳弼根委員 우리 아스콘공사 입찰업체가 어디입니까? 소재지가 어디예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도급자는 우창건설이고 소재지는 대구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委員님! 잠깐만이요. 委員님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계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건 좋은데 기왕이면 자세한 자료를 드려서 局長님과 委員님들 질의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주

세요. 단순하게 이렇게 질문 하나 나오면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를 드리면 局長님이 그걸 보시기만 하면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吳弼根委員 우창건설에서 입찰했습니까? 우창건설이 낙찰됐어요? 대구 사람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네. 그렇습니다.

○吳弼根委員 아무리 공개입찰이라고 그러지만 어떻게 우리 서울시 관내 분한테 이렇게 입찰을 주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어떻게 한 분이라도 와보십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하도급을 받은 분이 70%의 하도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일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일을 하면서 얼마나 투덜대면서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공사를 하면서 인건비 절감한다고 해서 밤 10시까지 공사를 해요. 사람들 잠자고 있는데 공사를 해요. 이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전부 식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식어서 갈아 놓으면 전부 떠버리는 거예요. 저희 관내에도 대부빌라라고 아남아파트 뒤에 있는데 제가 선심 쓴다고 아스팔트를 탁 갈아드렸어요. 공사를 9시 반까지 했어요. 한 2~3일 있으니까 전부 떴어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도 공사라고 해놓냐고 해요. 예산만 낭비하고 이런 공사를 왜 하냐고 얼마나 질타를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주민들을 위해서 해줬는데 그래 가지고 다시 갈았어요.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해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서울시내의 업자, 관내 업자가 이것을 말아서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局長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安載弘 局長님 말이지요 답변하시기 전에 吳弼根委員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아까 시공업체는 대구에 있는 우창건설이라고 답변을 했고 吳弼根委員님 질의 내용 중에 보면 그 시공자는 권 모씨라고 그랬는데 그럼 도로 포장공사는 하도급을 할 수 없는 전문공사로 알고 있는데 이 하도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인데 그것도 답변하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중에서 건설교통국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위원님 질문 내용에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지금 입찰이나 계획과정을 지적해주셨는데요 우창건설이든지 아까 하도급의 70%를 받아 가지고 하도급을 해서 불평불만을 한다든지 이로 인해서 정규시공, 정밀시공이 안되어 가지고 옆에서 보는 사람이라든지 민원이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공사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지적해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전체를 제가 답변하기는 자료도 없고 좀 부족합니다. 인정을 하니깐요 끝나는 대로 이 전 과정을 제가 조사를 하고 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吳弼根委員 하도급 받으신 분이 무조건 예산이 없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한다 하는 이런 책임회피성 말씀을 하시는데 공사를 하면서 빗발발이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화동은 그게 전부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그걸 그리티 그것으로 해달라, 우리는 보고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런 부분은 오히려 하도급을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기보다는 저희들한테 직접 얘기를 해주시면 그걸 우리가 설계변경을 들어가야 하니까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吳弼根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화동 관내에 아스콘공사를 세 번, 네 번 하면서 밤 10시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보시면 밤에 공사를 해놓고 나니까 낮에 가보면 이게 엉망입니다. 관계공무원은 한번이라도 현장을 보셨는지 묻고싶고 앞으로 철저히 현장방문을 해서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죄송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작업하는 사람, 원도급자, 도급자 내지 하도급자일을 하더라도 작업시간 관리도 저희들이 관

리 범위 내에 들어오도록 하겠고 현장을 확인을 하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불미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吳弼根委員 보고말씀에 국장님께서 하수관이나 도로포장공사 그 문제에 역점을 두고 5개년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관내에 도로포장공사를 하고 하수도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이 예산을 뒷받침을 해줘도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11월 20일까지 해가지고 세 군데를 포장을 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보내 주셨습니까마는 과연 이것을 언제 할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추워지면 아스콘 공사가 상당히 힘듭니다. 빠른 시일 안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吳弼根委員 예,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吳弼根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康局長께서는 위원님이 지적한게 다양해요. 하도급관계, 공사 단가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연간 단가계약,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재무건설위원회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세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委員長 安載弘 예, 吳錦南委員님! 질의하십시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지금 현재 사직동 동사무소에서 환경연합까지의 도로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아스콘을 썩었습니다. 그런데 주차기획선은 어디에서 그어놓은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주차구획선은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吳錦南委員 대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총체적으로만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의에도 본 위원도 이야기를 해서 구청장님한테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러나 지금까지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지난번에 폭우로 많은 피해들이 각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그 지역의 몇 가지를 말씀을 하실 때는 다 시행을 하겠다고 참작을 해서 모든 것을 해주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서 속기록에 남아야만 다 해주는 거냐 아니면 지난번에 각 동별로 모든 것을 수집을 했으니까 또 현장방문도 국장님께서 몇 동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줘야 할 것이냐 아니면 자료수집이 아직 안되어서 전혀 시행을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별로 자료수집이 동마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 시기도 벌써 몇 개월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동별로 선착순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저희 동에는 지난번 피해 입었을 때 즉시 처리한 보도블록 꺼진 것 이외에는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자료수집한 그 내용에 대해서 각 동별로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지금 과정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수해 이후에 저희 토목과에서 각 동에다 불편사항으로 나타난 것이 지역에 있다면 구에 그 사항을 제출해 주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91건이 들어온 걸로 알았는데 그 이후에 자치행정과에서 또 각 동에다 그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올려보내라고 했더니 181건인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간부회의 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분류도 해보고 현장에도 나가보고 어떤 것은 중복이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최근에 분류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38건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새로 이 부분들도 내년으로 예산 반영을 신청하도록 근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예산 반영되는 것은 133건이고 미반영되는 5건은 뭐냐 하

면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새로 뚫는 것은 구청 보고로 올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 불편사항에 수해하고 관계되는 이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현재 예산 반영 133건을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남아있는 예산 중에서 급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玄壽漢委員님이 제기한 건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아까 명확하게 올해 내에 그것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吳錦南委員 지금 현재 각 동별로 급한 사항이 거의 한두 건은 다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사직동에 사십계단 같은 데 지금 현재 아주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지금 지난번에 도림동의 15번지와 16번지 사이 골목길도 물받이는 지금 현재 말할 것도 없습니다. 비가 3mm, 4mm만 내려도 물받이를 해야 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렇게 급한 상황에 월동기에 눈이 내려서 조금만 녹으면 다니기가 급한 상황인데 물받이가 급한 상황이 많습니다. 玄壽漢委員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예비비라도 있는데 왜 안 하느냐 하는 거죠. 급한 사항을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셔도 구청 관계자 분들은 우이독경인지 어떤지 몰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직, 필운동에서 신고동까지 나는 도로에 신고동 쪽에 보면 주차장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 도로가 왜 그렇게 늦습니까? 여기에 보면 금년말로 되어 있는데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이 부분은 학교 담장이 저희들이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도 그 공사를 하고 담장을 헐다 보니까 거기에 문화재가 나왔어요. 담장이 문화재라고 해가지고 거의 한달 반간을 문화재 위원이라든지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것이 결론이 났습

니다. 곧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吳錦南委員 거기 주차장에 신교동 주차장에 다른 시설물을 한다는 그런 풍문이 들리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주차장 부지를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것은 입찰이 나가있습니다. 주차장을 하는 걸로

○吳錦南委員 그런데 왜 시중에는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기타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습니까마는 오늘은 감사나 이런 대상이 아니고 해서 이상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吳錦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玄壽漢委員님! 질의하십시오.

○玄壽漢委員 국장님! 청장님한테 무슨 얘기 못 들으셨어요? 도로굴착 포장이 안되었다고?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시가스나 상수도나 여하튼 도로굴착 복구비는 원이자 부담이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예, 그렇습니다.

○玄壽漢委員 그런데 만약에 상수도에서 뚫을 때 거기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누구한테 하청을 줘서 메웁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메웁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전체적인 입장으로는 기금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玄壽漢委員 시행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돈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제 지역을 자꾸 얘기해서 안 되겠습니까마는 한 골목을 세번 내지 다섯번을 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포장이 잘 안되는데 제가 여쭙보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주민들과 청장님 앞에서 제가 주민들 앞에서 변명을 했거든요. 곧 해결되니 참아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하문터널에서 세검정로터리까지 그 큰 도로차선 한 차선을 50m 간격으로 한달 전쯤에 뚫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쯤 복구를 했어요, 아스콘으로. 바퀴가 푹푹 빠지거든요. 구청장 있을 때 변명을 하면서 그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뚫는지 어디에서 뚫는지도 몰라요. 이유를 모르

겠어요. 국장님은 알고 있는지 몰라도 전혀 표지판도 없고 50m 간격으로 한 차선 폭을 파가지고 반쯤 복구를 했더라고요, 아스콘으로. 거의 바퀴가 빠져 가지고. 그래서 지난 29일 청장님 나오시고 주민들 계실 때 제가 변명을 했더니 바로 하겠습니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왜 파는지 몰라요. 인도 차도 경계석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한 차선을 올라오면서 그것을 해쳐놓으니까 버스나 승용차나 평장히 불편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인자 부담인데 바로 복구가 되어야 될 텐데 왜 안되나 해가지고 청장하고 주민들 앞에서 곧 될 거라고 한꺼번에 할 겁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보름이 지났는데 그것이 안되었더라고요. 그게 왜 파는지 몰라도 가스관도 아니고 상수도관도 아니고 그 길에서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그러니까 자하문터널 끝나는 데에서부터 세검정로터리까지, 세검정로터리에서 자하문터널 오는 쪽으로 있다고요.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누가 파는지도 모르겠고 왜 파는지도 모르겠고 자고 나니까 뚫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빨리 해주세요. 공사할 때 무엇 때문에 공사한다고 써 붙일 텐데 그런 것이 없어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알겠습니다.

○玄壽漢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국장님! 질의보다도 자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2쪽을 보시면 추진실적이 이렇게 나와있고 도표가 나와있는데 당초예산이라는 게 어떤 당초예산인지, 시비나 또는 그밖에 재해대책기금 모두가 포함된 당초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종로구 자체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상의 당초예산인지 그것이 구분이 안 가서 그래서 그것을 질문드리고 싶네요. 그것이 당초예산이라는 게 예산서 상에 나타난 건가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예산상으로 편성된공사

를 위주로 한 비용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심의가 되었던 그 내용이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康亨宇 建設交通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40分 會議中止)

(14時15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載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鐘路區廳長 提出)

○委員長 安載弘 의사일정 제4항 서울特別市鐘路區 區有財産管理計劃 變更計劃(案)을 상정합니다. 董連浩 財務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財務局長 董連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安載弘 委員長님! 吳弼根 幹事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정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대상이 되는 부지의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종로구 혜화동 1-23에 소재하는 구민생활관에 인접한 토지로서 면적은 171.2㎡이며 현재 나대지 상태로 측면에 약 4.5내지 6m 정도 높이의 옹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 부지매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는 구민생활관 바로 옆에 위치한 토지로서 구에서 매입시 구민생활관과 관련된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설치부지로

활용하거나 주민 휴식공간 조성부지 등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이 부지에 개인이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구민생활관에서 생기는 소음으로 인하여 이곳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지의 매입가격은 약 2억 2,7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예산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불법광고물정비 평가 결과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지급받게 되는 시상금 10억원 중 일부를 활용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2001年度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計劃 變更計劃(案)

(鐘路區廳長)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安載弘 董連浩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蔣昭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2001년 9월 28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 신청사유는 혜화동 소재 구민생활관과 접한 개인소유 임야를 형질변경하여 개발코자 하고 있어 이럴 경우에 구민생활관의 공공성과 쾌적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서 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현황입니다. 작년 정기회 때 당초에 신청한 건은 토지매입 3건입니다. 그 이후에는 금년까지 변경신청이 없었습니다. 금회 변경신청 대상부지 현황입니다. 토지는 혜화동 1-23번지이고 면적은 51.9평입니다. 지목은 현재 임야이고 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주변 여건 및 입지 형태는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보고 오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지매입 추진 경과입니다. 부지와 관련된 주변 환경도 본 건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 11월 30일자로 서울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서 올림픽기념관이 건립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997년 1월 21일자로 본 부지가 혜화동 1-23번지가 혜화동 1-13번지에서 분할이 되었습니다. 1-13번지는 과학교등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998년 1월 7일자로 구민회관이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우리 종로구로 위탁 운영이 되었습니다. 2000년 7월 26일자로 현 소유자가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학교법인인 고계학원으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 2001년 3월달에 토지소유자가 건축물 설계 계약을 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 및 다세대로 설계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2001년 4월 30일자로 토지형질 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5월 10일자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무단형질변경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소명하라는 이유로 보류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6월 26일자로 소명이 끝난 연후에 토지형질 변경 신청이 2차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자로 구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 결과 형질변경 허가를 불허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때 회의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월 4일자로 토지소유자에게 신청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느냐는 타진을 했더니 7월 7일자로 조건부로 빨리 매입한다면 팔겠다는 이런 매도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자로 감정평가 의뢰를 했더니 공시지가는 1억 9,000만원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액은 2억 2,769만 6,000원으로 평균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2001년 9월 27일자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매입 승인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시 관련위원님

들이 토지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주장한 내용들입니다. 본 토지는 도로와 5m의 단차를 이루고 있고, 도로와 접한 부분에는 녹지띠가 형성되어 있어서 구민생활관 부지와 일단을 이루는 형상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사이에 개인건물이 들어설 경우 공공시설의 재산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A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B위원은 개인 사유토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부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종로구에서 매입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다음 C위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민생활관 운영시 각종 소음으로 일반주택이 들어설 경우 오히려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다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많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본 위치에 개인건물을 지을 경우 주변환경이 저해되어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종로구에서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형질변경행위허가는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변경건의 집행예산은 불법광고물정비 평가 결과 우수구에 지급되는 서울시 인센티브 예산액 10억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 계획이므로 기존 성립예산의 변경은 초래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 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劉燦鍾委員! 질의하십시오.

○劉燦鍾委員 劉燦鍾委員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국장님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민생활관 이 부지가 서울시 땅으로 되어 있죠?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劉燦鍾委員 서울시 구민생활관이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자투리땅 50평 정도 되는 이 땅을 구에서 매입하는 것도 모양이 우습지 않겠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구체적인 추진경위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을 서울시에서 어차피 구민생활관이 서울시 소유니까 서울시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당장에 매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상황으로서 좋은 반응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劉燦鍾委員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을 구태여 자투리땅 부분을 구비로써 매입해서 활용한다손 치더라도 전체적인 땅이 서울시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자체가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에서 구태여 이 부분을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인센티브라도 10억 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용도로라도 예산을 더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財務局長 董連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구민생활관이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땅을 매입한다면 우리 구민생활관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의 매입 반응도 그런 의사도 가지고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구민생활관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소득도 우리 구 예산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 구에서 매입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劉燦鍾委員 그러면 이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소유주가 능동적으로 처리한 겁니까? 아니면 수동적인 측면에서 매입하게 된 겁니까? 여기 경위를 보면 예를 들어서 2001년 3월달에 건축물 설계계약을 했고 형질변경신청은 4월 30일날 하

고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5월 10일날 무단행위로 인해서 소명하라고 했는데 다시 6월 26일날 형질변경 2차 신청을 하고, 보통 분이 아니구만. 6월 29일날 2차 심의를 해서 매입 검토를 하는 이 단계가 그 양반이 소명을 해서, 쉽게 말해서 허가요건이 맞지 않다고 하면 그 땅을 구에서 매입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든지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劉燦鍾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것을 우리 구에다 땅을 파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런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이행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땅 소유주는 그 토지에다 적당한 규모의 주택을 건축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형질변경행위허가를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절차를 준비해왔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劉燦鍾委員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적도면에 구민생활관 면적하고 서울시 땅인데 이 면적하고 자투리땅은 삼각형으로 전혀 쓸모없는 땅이죠. 건축도 불가능합니다. 이 땅을 구에서 단순히 민원 야기가 있다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이것을 구입해서 어떤 용도로 쓰겠느냐는, 용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비교를 해보세요. 잘못하면 자투리땅을 가지고 특별하게 활용할 방안도 없고 하면 구태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財務局長 董連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현장을 여러 위원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마는 구에서 매입을 한다면 활용은 여러 모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태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휴식공간을 설치해서 구민생활관을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만일 이것을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한다면 용도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劉燦鍾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劉燦鍾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吳弼根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吳弼根委員 吳弼根委員입니다. 현 소유자가 토지를 학교법인에서 매입할 때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구체적인 매입가액은 사고파는 가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吳弼根委員 그래요? 제가 대충 알기로는 2억 8,000 정도에 매입했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財務局長 董連浩 곧 알아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吳弼根委員 좀 이따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吳弼根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金福同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金福同委員 金福同委員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공공시설물의 땅이 부족한 상태는 틀림없죠?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金福同委員 땅을 구청에서 매입해서 공공시설을 확정한다는 데는 우리 주민들에게 활용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봤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金福同委員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金福同委員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그것 때문에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도 계시고 그랬는데 이것이 애매하기는 애매한 땅입니다. 사실상 구청 구민회관 한 중심 부위에 들어와 가지고 약도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가봤었습니다. 이러한 땅을 합해 가지고 공공시설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라든가 활용가치를 충분히 우리 구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金福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위원장인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된 위원님이시든지 또는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된 위원님이시든 자치구가 구민을 위해서 재산을 취득해서 주민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본 위원도 기본적으로 오전에 얘기한 대로 위원님들 의견에 거의 찬성을 하는데 제가 재무국장이나 재무과장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러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에 대한 사용계획을 3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 주차장 두번째, 구민생활과 관련된 시설,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 하는데 들어간 비용과 토지매입 비용을 합하면 2억 몇천만원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토지를 매입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을 짓는다면 예산이 투입이 될 것이고 주차장을 한다면 주차장에 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의회에 보고해서 매입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2억 2,000만원에서 감정평가금액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 2,000만원이 집행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여기에 어떤 일정한 건물을 짓거나 하게 되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때 토지 51평에 들어가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을 넘는다고 하면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검토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막연하게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위원장님 말씀에 제 간략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토지의 구체적인 활용방안도 없이 우선 땅부터 사놓고 보자

는 과정상의 문제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이 땅의 경우는 좀 의견이 특수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현장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여기의 토지 형질변경행위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일정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토지주의 신청이 있었기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이후에 야기될 지도 모르는 또 다른 민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러한 구체적인 토지활용도가 없이 우선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러한 형태의 땅을 매입한다든지 할 경우에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입안이 돼서 활용도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는 가운데에서 땅 매입이 되어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래요.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짜고 집행해나가는 데 위원님들이 어느 분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를 보면 2000년 7월 4일에 토지소유자에게 신청 토지에 대한 매도의사를 타진해서 2000년 7월 7일 조건부 매도동의를 했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이 적정가에 사고 빨리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는 개인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유리한 여건을 끌고 가기 위해서 얼마든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다고 보고 또한 의회에 이러한 내용을 보고할 때는 적어도 그 사후 계획에 대해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의 계산이 있게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는 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억 3,000을 주고 땅을 사는데 앞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건축비로 7억이나 8억이 들어간다면 중장기 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행자부나 또는 자치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투융자 대상사업이나 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언제나 의회가 없을 때는 여러분들 임의로 했겠지만 의회가

생긴 이후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와 협력해서 의논하고 소속 상임 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해서 의사타진도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매입했다면 오늘 위원님들도 더 좋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복지시설을 하든 복지와 관련된 부대시설을 하든 전적으로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안 계시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재무국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해갈 때는 철저히 사전 검토해서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吳弼根委員님!

○**吳弼根委員** 3억입니까?

○**財務課長 趙秀完** 8,000만원 정도

○**吳弼根委員** 토지매입 할 때가 2000년 7월 26일인데 그때 우리 구청에 매입하라는 타진이 없었습니까?

○**財務課長 趙秀完** 없었습니다.

○**吳弼根委員** 그러면 7억 7,000 정도를 손해를 보는데 특혜시비는 없겠네요?

○**財務課長 趙秀完** 없죠.

○**吳弼根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어떤 계획을 잘 때 치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월에 구민회관 위탁운영을 종료구에서 시작을 했는데 2000년 7월 26일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99년도에 종료구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직이나 또는 자치구는 적어도 그러한 마인드를 가진 기획부서에서는 그러한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董連浩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원만하게 회의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42分 散會)

○出席委員 8人

安載弘 吳弼根 吳錦南 玄壽漢
丁炳煥 劉燦鍾 李炯述 金福同

○出席專門委員

蔣昭秀

○出席關係公務員

財務局長 董連浩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財務課長 趙秀完
土木課長 鄭璣哲

